



잠수기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사고위험 주의보

[잠수기어업 사고사망 사례]

■ 사고사례1

(22.4월) 경남 남해군 소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개 채취 후 감압 중에 잠수복 전면 지퍼부위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긴급히 부상 후 감압 미실시. 하선 후 이상증세를 보여 의료기관 이송, 치료 중 사망(1명)

(발생원인)

반복잠수 시 감압시간 미준수 및 안전절차 미준수

※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9호)에 따른 감압절차·시간 준수

■ 사고사례2

(22.2월) 경남 거제시 항포해상에서 조개채취 후 선상에서 휴식 중인 잠수사가 의식저하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감압을 위해 다시 잠수하였으나 감압 중 긴급 상승 후 의료기관 치료 중 사망(1명)

(발생원인)

수심 약25미터 잠수작업 시 수중 감압 미수행

※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9호)에 따른 감압절차·시간 준수

■ 사고사례3

(21.10월) 경남 거제시 망와도 인근에서 조개채취 중 공기압축기가정지하여 공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망(1명)

(발생원인)

작업 중 공기압축기 가동 중단에 따른 공기공급 중단

※ 작업 전 잠수설비 점검 및 공기공급 중단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기체통 착용

[잠수기어업 안전조치 사항]

■ 선주 조치사항

- 1) 위험성 평가(위험성 인지, 분석, 제거(완화) 등)
- 2)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감시인 배치
- 3) 잠수장비의 정기적 유지보수
- 4) 기체분압에 따른 잠수 수심 한계 및 작업한계 설정(유속, 풍랑, 파고 등)
- 5) 감압계획에 따른 잠수계획(작업일정) 수립
- 6) 감압계획 준수
- 7) 감압방법, 응급조치 등에 관한 교육 실시
- 8) 비상계획 운영

■ 작업전 안전수칙

- 1) 공기압축기 및 공기저장탱크(공기조) 점검
- 2) 압력저하 감지(및 경보 장치) 설치
- 3) 공기압축기 구동레버(클러치) 이탈 방지 조치
- 4) 비상기체통 지급 및 착용
- 5) 9미터 보다 깊은 수심에서 고순도산소 사용금지
※ 산소중독으로 인해 통제불능의 경련 발생
- 6) 수중 산소호흡 시 전면마스크 사용
※ 산소경련 발생 시 호흡기 이탈로 인한 익사 예방
- 7) 압축공기질 기준 준수

〈압축공기〉 산소 20~22%, 이산화탄소 1,000ppm이하
일산화탄소 10ppm이하, 오일미스트 5mg/m³이하



잠수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 반드시 잠수설비 점검 및 비상기체통 착용
감압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정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